

웅지세무대학교	장애학생지원규정	문서번호	5-2-05(E)-0
		제정일자	15.06.01
		최근개정	-
		주관부서	학생처
		홈페이지공개	공 개

웅지세무대학교 학생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수업 참석 및 진로 상담 등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장애학생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였거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을 말한다.

제2장 장애학생지원

제3조(원칙) 장애학생에게 교육, 수업, 학내활동 및 진로지도 등에 있어 일반학생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9명)인 경우에는 교학처 학생팀에 전담직원을 둬으로써 이에 갈음 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편의제공 등) ①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제6조(수강신청) 장애학생 유형별 수강신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학사관리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제7조(장학금 지급) 장학규정에 따른 일정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8조(도서관 이용) 장애학생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 및 편의를 제공한다.

1. 장애학생 전용 열람석
2. 장애학생 전용 사물함
3. 도서 대출기간의 연장적용
4. 기타 장애학생의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편의 지원 등

제9조(장애학생 상담) ① 장애학생의 교수, 학습, 학내활동 및 진로선택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장애학생 유형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도우미 제도 운영) ①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

1. 학습보조 도우미
2. 이동보조 도우미
3. 도서관이용 도우미

② 도우미에게는 사회봉사활동 교과목 성적을 인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교육 기자재 보유) 제5조제1호에 의거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교육 기자재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12조(전용시설) 제5조 제5호에 의거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장애학생 전용 주차장
2. 장애학생 전용 화장실
3. 장애학생 전용 검색대(PC)
4. 기타 장애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3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제13조(구성) ①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학생들의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결원으로 인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심의한다.

1. 지원팀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팀규정 제·개정 및 폐지
3.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 지원 개선·발전방안에 관한 주요사항
6. 도우미 제도 및 자원봉사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장애학생 차별 사건에 관한 사항
8. 기타 지원팀운영 및 장애학생과 관련한 중요 사항

제1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와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이나 전자메일 등의 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16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학생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제18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준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1판-개정/시행 2015.06.01.>

이 규정은 2015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